
2026년 물가안정 유공 포상 계획

2026. 7.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

「2026년 물가안정 유공」 포상 계획

I 개요

□ 포상 대상

- 고물가 속에도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정책에 적극 협력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인·단체 및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 포상의 훈격 및 규모

- 정부포상(잠정) : ○○점(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정부포상 규모는 추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 예정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 120점

□ 수 여 : 2026년 12월(예정)

II 추천 기준

- (주요대상) 물가안정을 위해 '25년 7월 ~ '26년 6월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한 개인 또는 단체

<물가안정 유공포상 중점 추천기준>

- ①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 또는 호응하여 가격 안정화에 기여했거나 관련 우수 사례가 알려진 개인·단체
- ②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 또는 원재료 등에 대한 생산량 확대 또는 대규모 가격할인 행사 등을 기획 또는 시행하여 물가안정에 직접·구체적으로 기여
- ③ 중동전쟁 및 공급망 불안 등에 대응하여 석유류 등 주요 원자재·소비재를 집중 관리하여 가격안정에 기여
- ④ 원가 상승 요인에도 가격동결 등 고통 분담을 통해 국민 부담 완화에 기여
- ⑤ 물가안정대책 수립, 농축수산물 등 유통구조 개선, 지방 공공요금 동결 등 안정적 물가관리에 기여

□ 개 인

- 물가 안정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 물가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나 시책 개발 등에 적극 참여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는 자
- 장기간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을 최소화 하는 등 물가 안정에 기여한 자, 기타 물가관련 업무에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단 체

- 효율적인 물가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물가 안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등 국민 의식제고 노력 등에 있어 타 기관의 모범이 되는 단체
-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에 협조하고 물가 안정을 위하여 노력한 기업·협회·학회 등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 수공기간 : 추천일(2026. 6. 30) 기준으로 산정

- 공통 : 직접적 물가관련 업무 1년 이상
- 정부포상(정부포상업무지침) * 단체는 표창만 추천가능(훈·포장 불가)
 - 훈장 : 해당분야 수공기간 15년 이상
 - 포장 : 해당분야 수공기간 10년 이상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 해당분야 수공기간 5년 이상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 민간인 :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 재직공무원 : 재직기간(실 근무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 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단체 :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그 활동이 지속 된 기관

□ 재포상 금지(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 >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 기존 포상을 받은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 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 의사 상자(이에 준하는 의인 포함),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추천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

- 동일한 공적(물가안정 유공)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음
-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모범공무원 등 종류 무관)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추천할 수 없음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받은 자는 1년 이내에 재포상 금지(다만, 동일 분야에 대한 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재포상 금지)
 - ※ 우수창안자와 국가중요정책사업 수행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자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단체는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음(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따른 평가 또는 대회 우수기관은 제외)

Ⅲ

추천 제한

< 정부포상 >

○ 일반국민 포상

-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2) 형사처분을 받은 자

-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 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 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

○ 재직공무원 포상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을 받은 자

-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군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 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

○ 단체표창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 단,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

- 직위해제 또는 징계(불문경고 포함) 처분을 받은 자
 - 제한기간: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직위해제 2년, 불문경고 1년 등
 - ※ 징계 및 불문경고 기록 말소 기준(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
 -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된 경우는 추천 가능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징계·
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징계절차 진행 중(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포함)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IV

제출 서류

□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공통 (* 붙임 1. 공통서류 참조)

① 자체 공적심사 의결서(서명본)^{스캔PDF} * 기관별 자율

② 공적조서(* 공무원·민간, 단체용 구분)^{HWPX 및 스캔PDF}

※ 추천대상 각각의 공적사항을 육하원칙에 맞춰 기술하고, 수치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

※ 공적조서의 조사자는 피추천인의 차상급자, 추천관은 기관장으로 하고 기관장 직인 날인

※ 공적조서는 서술식으로 작성하고, 각각의 공적마다 근거가 되는 실적수치가 기재되어야 하며, 분량은 표지 포함 최소 2,000자 이상(도표, 그림, 사진 제외) 작성

③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또는 (민간인) 이력서^{스캔PDF}

* 인사담당자(담당관)의 서명 및 소속기관장의 직인 날인 필수

□ 정부포상 (* 붙임 2. 정부포상 제출서류 참조)

①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스캔PDF} ※ 본인의 자필서명 후 제출

②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HWPX 및 스캔PDF}

* 징계처분 및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계류 등 물의야기 여부는 포상대상자 소속기관에서 확인 후 인사부서장의 확인·서명 후 제출

* 범죄·수사경력, 산재 관련 추천제한, 공정거래, 임금체불, 조세 관련 추천제한 여부는 재정경제부에서 일괄 조회 예정

③ 정부포상 추천자 공적요지^{HWPX}

④ 정부포상 추천자 제한사항 조회서^{HWPX}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 붙임 3. 장관 표창 제출서류 참조)

① 표창 추천자 현황^{HWPX 및 스캔PDF}

② 표창 추천자 목록(엑셀)

IV

행정사항

□ 제출기한 : '26. 8. 17.(월)

□ 제출방법

- 최종 추천 후보자는 기관별로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사를 거쳐 공문으로 시행
- 다만, 공문에는 추천 훈격, 대상(이름, 직급) 및 추천인원만 간략하게 기재하고, 그 외 서류는 메일*로 별도 송부

* 온메일 사용기관 : hyoylee@mail.go.kr, 온메일 미사용 기관 : hyoylee@korea.kr

- 최종 날인서류는 사본 제출(스캔), 날인된 원본은 5년간 자체 보관

※ 기관은 추천자별로 스캔하여 '기관명-추천훈격-추천자 성명'으로 제목 표기
(ex. 행정안전부-훈장-홍길동, 행정안전부-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홍길순)

□ 기타사항

- 추천부서는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정부 포상 업무지침 등을 숙지하여 포상 추진

※ 본 사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준함

- 정부포상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포상규모 협의를 통해 최종 포상 대상자가 선정되므로, 추천 시 모든 후보자가 포상을 받는 것이 아님을 후보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

- 문의사항 :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 044-215-2775 또는 hyoylee@korea.kr)

<서식 1-1> 민간인, 공무원

공 적 조 서(개인)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계급	
추천훈격		추천순위	
공적분야		공적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월일	(20) 이 력	(21) 년월일	(22) 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 · 포장 · 표창별로 기록)			
(23) 년월일	(24) 내 용	(25) 년월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 최소 2,000자 이상, 분량 부족 시 상훈시스템에 등록이 안됨 - 서술식 작성(개조식, 표, 그림, 사진은 작성 금지) - 문장 중간에 줄바꾸기(enter) 금지 - 추천대상이 민간, 기업체인 경우 기업체 사적 목적의 단순 행위 기재 지양, 공익성을 포함한 내용 기재			

공 적 조 서

단 체 명	법정 단체명		
법인 번호	13 자리	사업자등록번호	10 자리
주 소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는 상훈시스템 입력 불가능)		
연락처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대표자 성명			
추천훈격		공적기간	0년 0월로 기재 예)23년5월
공적요지 (70자 이내)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조 사 자			
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의 과장급 이상(○),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과장(×)		
직위(직급·직급)		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추천기관의 기관장)	직인
추천관은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행정안전부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장(○),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단 체 연 혁			
(12) 년 월 일	(13) 내 용	(14) 년 월 일	(15) 내 용
과거포상기록(훈장 · 포장 · 표창별로 기록)			
(16) 년 월 일	(17) 내 용	(18) 년 월 일	(19) 내 용
(20) 공 적 사 항			
- 최소 2,000자 이상, 분량 부족 시 상훈시스템에 등록이 안됨 - 서술식 작성(개조식, 표, 그림, 사진은 작성 금지) - 문장 중간에 줄바꾸기(enter) 금지 - 추천대상이 민간, 기업체인 경우 기업체 사적 목적의 단순 행위 기재 지양, 공익성을 포함한 내용 기재			

<서식 2-1> 공무원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 직 급	
4) 성 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한자		6) 군 번 (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12) 특 정 직	. . ~ . . (년 월)
8) 일 반 직	. . ~ . . (년 월)	13) 교 원	. . ~ . . (년 월)
9) 별 정 직	. . ~ . . (년 월)	14) 군 인	. . ~ . . (년 월)
10) 기 능 직	. . ~ . . (년 월)	15) 군 무 원	. . ~ . . (년 월)
11) 고 용 직	. . ~ . . (년 월)	16) 기타()	. . ~ . . (년 월)
합 계 ㉔		년 월	

17) 제외기간		
합 계 ㉕		

18) 실 재직기간 (㉔ - ㉕)	년 월	19) 추천훈격	
----------------------	-----	----------	--

10) 징계, 형벌	종 류	일 자	21) 과거포상	포 상 명	수여일자
	없 음		(모범,총리 표창이상)		
22) 작 성 자 (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 급		성 명 ㉖	직 급		성 명 ㉗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서식 2-2> **민간인**

사 진		이 력 서				
		성 명	한 글		생 년 월 일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핸드폰번호 및 연락처 기재)		
학 력	기 간	학 교 명 (고교 이상)		전공(학위)		
경 력	기 간	근 무 처 (부 서)	직위(급)	업 무 내 용		
상 훈	년 월 일	상훈 사항		시 행 처		
형 별	년 월 일	종 류		비 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 ○ ○ (서명)						

<서식 3-1> **민간인 · 공무원**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 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

(서명)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재정경제부(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근거 : 「상훈법 시행령」 제 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 증명서 발급	기록부 : 영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부 귀중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정부포상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사유(포상명)	「상훈법」 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 제10조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 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 제20조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 단체용)

☐ 포상 후보자

단 체 명	
주 소	

위 단체는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단체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피추천기관명

(관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 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 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 4> **민간인·공무원·단체 공통**

[별지 제6호의1 서식]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 2026년 물가안정 유공**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⑧ 징계 (연도·종류 , 사면)	⑨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 체불	⑦ 세금채납				
									국세	관세	지방세		
《예시》													
〇〇회사	사장	이몽룡	동탑 산업	30-02 -19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1 과징금1	명단 공개	무	무	무	-	언론보도 (06.7.1)
〇〇회사	부장	성춘향	석탑 산업	20-02 -19	무	-	-	무				-	무
〇〇〇도 〇〇시	행정 주사	허생	옥조 군정	25-02 -19	무	무	-	-				'95 견책 (사면)	무

*** ③~⑦번은 재정경제부에서 일괄 조회예정**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 작성시 참고사항 》

-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도로명주소(로, 길, 읍면)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 ② 상훈업무관리시스템의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 ③ 범죄경력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조회기관 :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범죄분석담당관실(☎ 02-3150-1960~61)
-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중대산업발생사고) 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3)
-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27)
- ⑥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7)
- ⑦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1600-8200)
※ 국세 : 국세청 징세과(☎044-204-3028),
관세 :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646),
지방세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044-205-3815)
- ⑧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여부를 표기
- ⑨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⑨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서식 5> 민간인 · 공무원 · 단체 공통

정부포상 추천자 공적요지

○ 포상명 : 2026년 물가안정 유공

연 번	추 천 훈 격	성 명 (연령)	소속 (직위,수공기간)	공 적 요 지(1/2페이지 정도)
1		(세)	(, 년 월)	○ - * ○ - * ○ - *
2		(세)	(, 년 월)	○ - * ○ - * ○ - *
..				

<서식 6> 민간인 · 공무원 · 단체 공통

정부포상 후보자 제한사항 조회서

○ 포상명 : 2026년 물가안정 유공

부처 (기관)명	공무원/ 민간인	후보자 성명	직위(급)	주민번호	사업장주소	대표자명	법인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서류

<서식 7> 민간인·공무원·단체 공통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추천자 현황

○ 포상명 : 2026년 물가안정 유공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수공기간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물이야기 (일시·내용)
				시작-종기	기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예시》							
○○회사	사장	나장관		89-01-14~ 18-03-02	30-02-19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나차관				-	무
○○○부	지방행정주사	나주사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